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28 2016년 11월 30일 행정자치위워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희걸 의원 외 16명

나. 발 의 일 : 2016년 10월 21일

다. 회 부 일 : 2016년 10월 24일

라. 상 정 일 : 제27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 11월 30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 희 걸 의원)

가. 제안 이유

현행 조례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매각가능 항목 중 일부 항목의 기준일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일과 불일치하여 이를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제38조제1호의 경우에 대한 기준일을 현행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함.(안 제38조제1호)
- 2) 제38조제4호의 경우에 대한 기준일을 현행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함.(안 제38조제4호)
- 3) 제38조제8호의 경우에 대한 기준일을 현행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함.(안 제38조제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자치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16. 11. 28 ~ 2016. 12. 5)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국유재산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시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부 항목의 매각요건 기준일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안제38조)하려는 것인바, 상위법령과의 조화를 이루고 법의 연계성을 감안할때, 당해 개정 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	1. <u>2012년 12월 31일</u>
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3.(생략) 4.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	
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	
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수 있다. 5.~7.(생략)	 5.~7.(현행과 같음)
8. <u>2003년 12월 31일</u>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 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8. <u>2012년 12월 31일</u>
<u> </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집행부(재무국-자산관리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16.7.12) 과 시행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 개정배경 : 특정건축물¹⁾ 정리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적용시기를 2003년에서 2012 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중 6개(부산, 인천, 울산,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광역자치단체가 개정을 완료한 상황임

〈관련 조문〉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0조(처분의 방법)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이상으로 한다.
- 14. 국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판결 등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국유지
- 1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자치부 고시 2016-30호, '16.8.3) 제16조(수의매각)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 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 다만, 본 조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의 개정으로 점유기준일이 (기존: 2003년 12월 31일 ⇒ 개정: 2012년 12월 31일) 변경되는 바, 변경에 따른 민원발생소지 여부와 법적용상 충돌되는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하겠음.

¹⁾ 특정건축물은 일정면적 이하의 주거용건물에 한하여 건축허가 후 준공절차 없이 사용하거나 건축허가 없이 축조한 건물을 양성화된 주거용 건축물을 의미함.

- 또한, 특정건축물로 양성화된 건축물의 현황자료는 있으나, 정확한 지번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바, 자치구별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집행부는 본 조례 개정 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8

발의년월일 : 2016년 10월 21일

발 의 자 : 김희걸 의원(1명)

찬 성 자 : 우형찬·김기대·우미경·

강구덕·남창진·박운기· 한명희·문형주·오승록· 장우윤·김혜련·유동균· 박기열·김영한·김진철·

김춘수 의원(16명)

1. 제안이유

현행 조례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매각가능 항목 중 일부 항목의 기준일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일과 불일치하여 이를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제38조제1호의 경우에 대한 기준일을 현행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함.(안 제38조제1호)
- 나. 제38조제4호의 경우에 대한 기준일을 현행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함.(안 제38조제4호)
- 다. 제38조제8호의 경우에 대한 기준일을 현행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함.(안 제38조제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자치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 구조무 대비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호 중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제4호 중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제8호 중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u>2003년 12월 31일</u>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1. 2012년 12월 31일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	
지(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	
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	
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	
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3.(생략)	2.~3.(현행과 같음)
4.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	4
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	
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u>2003년 12</u>	2012년 12월 31일
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	
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	
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	
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	
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	
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	
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	
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	
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7.(생략)	5.~7.(현행과 같음)
8. <u>2003년 12월 31일</u>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8. 2012년 12월 31일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	
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